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1. 수정이유

항공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 두고,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수정함.

2. 주요내용

- 공항지원팀의 문화체육관광국 관광항공과 재조정에 따른 수정내용
 - 제12조 균형건설국 ‘공항시설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’의 신설 조항을
 - 제11조 문화체육관광국 ‘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’으로 조정
 -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
(부칙) 제3조제8항 중 ‘제11조제3항 중 “관광항공과장”을 “관광과장”으로 한다’를 삭제
- 건축디자인과 국 이관 및 명칭변경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
(부칙관련)
 - 충청북도 건축조례,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, 충청북도 주택조례 관련 중 “건축디자인과”, “건축디자인과장”을 “건축문화과”, “건축문화과장”으로 개정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12조(균형건설국) ‘공항시설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’의 신설 조항을
제11조(문화체육관광국) ‘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’으로 조정
제11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로 조정
제12조 제20호를 삭제,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
20호부터 27호까지로 조정

부칙 개정안 조정(다른 조례의 개정)

·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

제3조제8항 중 ‘제11조제3항 중 “관광항공과장”을 “관광과장”으로 한다’를
삭제

· 충청북도 건축조례 관련

제3조제13항에 ‘제8조제2항 중 “건축디자인과장”을 건축문화과장“으로, “
건축디자인과”를 “건축문화과”로 한다.’ 및 ‘제22조제2항 중 “건축디자인
과장”을 “건축문화과장”으로 한다.’를 신설

·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관련

제3조제14항에 ‘제25조제5항 중 “건축디자인과장”을 “건축문화과장”으로
한다.’를 신설

· 충청북도 주택조례 관련

제3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

⑮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본문 중 “건축디자인과장”을 “건축문화과장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1조(문화체육관광국)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.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. 예술·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4. 문화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. 전문체육, 생활체육,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6.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.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8.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 9. 관광, 레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.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 11.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·육성 12. 공공디자인,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	제11조(문화체육관광국)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9. (개정안과 같음) 10. <u>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</u> 11.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 12.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·육성 13. 공공디자인,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
제12조(균형건설국)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9. (현행과 같음) 20. <u>공항시설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</u> 21. ~ 28. (현행과 같음) <삭 제> <삭 제> <삭 제>	제12조(균형건설국)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 1. ~ 19. (개정안과 같음) <삭 제> 20. ~ 27. (개정안과 같음)
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(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 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·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⑦ (생략)	부 칙 제1조 ~ 제2조 (개정안과 같음) 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~ ⑦ (개정안과 같음)

개 정 안	수 정 안
⑧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관광환경국장”을 “문화체육관광국장”으로 한다. <u>제11조제3항 중 “관광항공과장”을 “관광과장”으로 한다.</u> ⑨ ~ ⑫ (생략) ⑬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중 “균형건설국장”을 “문화체육관광국장”으로 한다. ⑭ 「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2항 중 “균형건설국장”을 “문화체육관광국장”으로 한다.	⑧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문화관광환경국장”을 “문화체육관광국장”으로 한다. <u><삭 제></u> ⑨ ~ ⑫ (개정안과 같음) ⑬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조제2항 중 “균형건설국장”을 “문화체육관광국장”으로 한다. <u>제8조제2항 중 “건축디자인과장”을 “건축문화과장”으로, “건축디자인과”를 “건축문화과”로 한다. <신 설></u> <u>제22조제2항 중 “건축디자인과장”을 “건축문화과장”으로 한다. <신 설></u> ⑭ 「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4조제2항 중 “균형건설국장”을 “문화체육관광국장”으로 한다. <u>제25조제5항 중 “건축디자인과장”을 “건축문화과장”으로 한다. <신 설></u> <u>⑮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<신 설></u> <u>제9조 본문 중 “건축디자인과장”을 “건축문화과장”으로 한다. <신 설></u>